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

■ 백종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2964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광석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자격증 발급 수수료의 직접 충당 근거 마련	2

I. 개요

1. 백중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96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백중헌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8. 20.

(3) 회 부 일 : 2024. 8. 2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고령화 등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2023년 12월말 기준 약 148만 건 정도 발급되었으며, 매년 약 10만여 명의 신규 사회복지사가 배출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5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교부업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하여 발급하고 있음.

그러나, 자격증의 교부업무 위탁사업에 따른 경비 사용 근거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납부받은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자격증 교부 등의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위탁사무의 안정을 기하고자 함(안 제11조제8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자격증 발급 수수료의 직접 충당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재발급 시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 ⑦ (생략) <u><신설></u>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u>제52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제5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u>

나. 검토의견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사업종사자’라는 명칭으로 도입되었고, 이후 1983년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변경되었음.
-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교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되어 운영되어오다, 1998년 7월 16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839호) 개정에 따라 1999년부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자격증 발급수수료도 징수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업무 위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제5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권한의 위탁) ③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에 관한 업무는 중앙협의회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교부업무는 협회에 위탁한다.

- 참고로, 사회복지사 자격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됨.¹⁾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

- 사회복지사 1급은 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자격임.
- 사회복지사 2급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자격임.

< 연도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현황 >

(단위 : 건, '23.12.31. 기준)

연 도	총계		1급		2급		3급	
	당해연도	누계	당해연도	누계	당해연도	누계	당해연도	누계
2011	69,992	482,807	3,635	94,623	66,164	375,776	193	12,408
2012	77,723	560,530	9,834	104,457	67,722	443,498	167	12,575
2013	77,087	637,617	6,060	110,517	70,847	514,345	180	12,755
2014	75,606	713,224	6,377	116,894	69,058	583,404	171	12,926
2015	75,848	789,071	6,783	123,677	68,871	652,274	194	13,120
2016	75,198	864,269	9,528	133,205	65,508	717,782	162	13,282
2017	73,771	938,040	5,603	138,808	68,005	785,787	163	13,445
2018	81,607	1,019,647	7,311	146,119	74,177	859,964	119	13,564
2019	87,472	1,107,119	7,747	153,866	79,724	939,688	1	13,565
2020	100,224	1,207,343	8,427	162,293	91,794	1,031,482	3	13,568
2021	93,535	1,300,878	16,355	178,648	77,174	1,108,656	6	13,574
2022	90,915	1,391,793	9,073	187,721	81,841	1,190,497	1	13,575
2023	89,061	1,480,854	9,740	197,461	79,320	1,269,817	1	13,576

* 사회복지사 3급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등에게 부여되는 자격이었으나, 2018년 이후 2급으로 통합·정리되었음.

자료: 보건복지부

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영역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 한편,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징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수수료는 자격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자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자격요건 확인 심사비, 자격증서 발송 우편비 등의 경비에 직접 충당하여 사용 중임.

- 사회복지사 자격발급에는 자격관리시스템의 운영,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의 선정 및 관리,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심사, 결격사유 확인, 자격증 번호 부여 및 제작, 우편 발송 등 다양한 행정업무가 수반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업무 흐름도 >

업무내용	담당기관	비고
자격신청정보 온라인 입력	신청자 본인	수시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신청서 출력	신청자 본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자격증 발급수수료 납부	신청자 본인	
자격증 발급신청 구비서류 접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방협회	
신청서 및 구비 서류 검토, 수수료 입금 확인 (서류 보완 필요시 요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방협회	
자격증 발급신청 구비서류 발송 (검토 완료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방협회	
서류 도착확인 및 서류심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	처리기간 14일* (근무일 기준)
결격사유 조회	등록기준지	
자격번호 부여 및 자격증 제작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	
자격증 우편발송(등기우편) 또는 직접수령(선택)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	

- 자격증 발급 관련 예산은 연간 약 14억원 규모로, 국비 지원 4억원, 자격증 발급수수료 수입 약 9억원이고 나머지 부족분은 수탁기관(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일반예산(회비 등)으로 충당하고 있음.

< 2019~2023년 자격증 발급수수료 납부액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수료 납부액	934,138,200원	1,039,435,000원	998,105,000원	983,915,000원	955,155,000원

* 자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현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발급수수료 수입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자격증 발급 업무 등에 사용하고 있는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²⁾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민간단체에 맡겨 그의 명의로 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와 관련된 현금 수입까지 민간단체의 이익으로 귀속시킨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음.
- 다만,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 수입으로 위탁받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충당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수료를 합법적으로 필요한 경비 등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수수료 직접 충당 관련 유사 입법례 >

<영유아보육법>

제22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이하 "보육자격증 교부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삭제<2011.8.4.>

④ 삭제<2011.8.4.>

⑤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는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 (보건복지부: 수용)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업무 위탁에 따른 경비사용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수료 직접 충당 규정 신설 필요
-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찬성) 법적 국가 위탁사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수수료 사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에 찬성함

문 의 처

02)6788-5497